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25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변론 종결2023. 3. 16.

판결 선고2023. 4. 13.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66,414,3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와 C 사이에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30,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와 C 사이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36,4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원고에게, 피고 A는 396,514,342원, 피고 B은 36,4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특수공법인이다.

(2) D은 2011. 4. 14.부터 2013. 11. 11.까지는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2016. 1.경까지는 포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2012. 3. 2.부터 2031. 11. 11.까지는 위 F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2016. 11.경까지는 H병원(이하 위 두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3) 피고 A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은 C의 아들이다.

나. C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행위

C은 '의료인이 아닌 D과 공모하여 2012. 3. 2. 이 사건 병원을 C 명의로 개설하고, 2012. 3. 2.부터 2016. 1.경까지 C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 원고)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2,689,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562, 2017고합313(병합)]. 위 판결은 2018. 12. 2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노1861) 2019. 1. 4. 확정되었다.

다. C에 대한 원고의 환수결정

(1) 원고는 2016. 11. 21.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D, C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통보를 받고, 2016. 12. 5.

C에게 요양급여비용 11,157,186,30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7. 1. 11.

요양급여비용 11,089,963,30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C은 위 환수금액 중 3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2020. 7. 27. 기준 C의 미납

환수금액은 12,087,759,990원(= 이 사건 환수결정상 환수금액 11,089,963,300원 - C이 납부한
금액 300,000원 + 미납연체금 997,796,690원)이다.

라. C의 재산처분

(1) C은 2016. 4. 1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2016. 4. 19.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6. 4. 20. 같은 목록 기재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터 4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터 4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채권최고액
540,000,000원(피담보채무액 425,585,658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 후인 2016. 7. 1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는 주식회사 J의 채권최고액
142,900,000원(피담보채무액 109,9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후인 2016. 7. 20.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그 후 피고 B은 2017. 1. 4. K에게 22,000,000원에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
1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 A는 2017. 2. 15. L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2. 1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3. 22. M에게 692,000,000원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한 토지, 건물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보유하게 되는바, C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1989. 7. 1.경부터 C의 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그 변동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C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2017. 6. 16. 또는 늦어도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압류한 2017. 9. 11.에는 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0. 8. 5.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제1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보험료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전 국민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 과세자료에 C의 보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사실을 그 당시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C의 과세자료를 통해서는 특정 시점에 C이 보유한 재산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한 2017. 1. 11.경에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보유 재산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태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2017. 6. 16. C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7. 9. 11.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압류하기는 하였으나(을8호증),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미루었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위 담당직원이 2020. 7. 17.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C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D이 C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2012. 3. 2.부터 2016. 1.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자인 C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환수결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7. 1. 11. C에 대하여 11,089,963,30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이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환수처분이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이기는 하나(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향후 C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징수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갑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이 아래 재산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표] 재산내역표

이 사건 제1부동산	692,000,0002) 피고 A는 2017. 3. 22. M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9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I 대출채무(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25,585,658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사건 제3부동산	240,000,0003) 피고 A는 2017. 2. 15. L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J 대출채무(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9,900,000
이 사건 제4부동산	22,000,0004) 피고 B은 2017. 1. 4. K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제1부동산	692,000,000) 피고 A는 2017. 3. 22. M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9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I 대출채무(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25,585,658
	제4부동산을 2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4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천시 N 건물	4,091,896,600	중소기업은행 대출채무	3,020,000,000
포천시 N 토지			
포천시 O 토지			
포천시 P 토지			
합계 5,045,896,600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11,089,963,300	
	합계	14,645,448,958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성립한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C의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그 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1부터 3부동산은 피고 A가 배우자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부터 3증여계약은 C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선산 관리를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A가 약사로 일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입 무렵인 1996. 10. 28. 당시 피고 A의 언니인 Q가 매수자금 7,200만 원 중 6,200만 원을 C에게 보내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을1부터 3호증) 피고 A가 이 사건 제1부터 3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또한 설령 이 사건 제4부동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C이 그 관리를 위해 아들인 피고 B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4부동산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4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 B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A가 2017. 3. 2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92,00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266,414,342원(= 692,000,000원 - 425,585,658원)과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액 중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12,087,759,990원 중 적은 금액인 266,414,342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A가 2017. 2. 15.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130,100,000원(= 240,000,000원 - 109,900,000원)과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액 중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12,087,759,990원 중 적은 금액인 130,1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8. 20. R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R가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R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제4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7. 1. 4. 이 사건 제4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S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7. 16.을 기준으로 36,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 36,420,000원과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액 중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12,087,759,990원 중 적은 금액인 36,42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①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266,414,342원의 한도 내에서, ②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은 130,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 이 사건 제4증여계약은 36,42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396,514,342원(=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266,414,342원 +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130,100,000원), 피고 B은 36,4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우정

판사김연수

판사김현호

별지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C이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피고 A는 2017. 3. 22. M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9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피고 A는 2017. 2. 15. L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피고 B는 2017. 1. 4. K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을 2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거래가액이 특별히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4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